

학칙으로 교수 성폭력 해결하기

0. '교수 성폭력'을 만나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수십 개의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들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교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교수 성폭력 사건은 대학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수 성폭력은 교수-학생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문제시되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사회에는 교수 성폭력을 둘러싼 침묵의 고리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다수의 교수들과 학교 행정가들에게 교수 성폭력은 몇몇 '문제 있는' 교수들의 개인적인 잘못 혹은 실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어렵게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히 배제되는 상황을 만든다. 교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학교와 교수 집단이 오히려 성폭력 사건 방조와 은폐,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부정 및 2차 가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교수 성폭력의 현재 상황이다.

1. 교수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사회의 구조와 그 모습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한다. 전통적인 유교적 교육관이 지배적인 한국 대학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강의나 연구 담당자 이상의 지위를 획득한다. 스승으로 불리면서 도덕적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적, 진학, 논문, 취업 등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는 철저히 위계적으로 구조화된다. 특히 남성중심성과 서열주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학 사회 내에서 남성 교수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성폭력 가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학 내에서 교수 지위는 수년 동안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마저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교수 성폭력은 철저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학생을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와 계속되는 2차 가해에 노출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

▼ 사건 발생

현재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교수가 학생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수를 '믿는' 수밖에 없다. 성폭력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라도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학의 상황이다. 교수는 학생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학 당국은 교수의 이러한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으면서도 이 지위가 교육이나 연구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지난 5월에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발언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수십 건의 언어적 성폭력 사례를 접수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교수나 강사에 의해서 수업 중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중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 교수나 학교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2000년에 발생한 사회복지학과 김기환 교수 성폭력 사건은 교수 지위가 성폭력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교수가 논문 지도 명목으로 학생을 불러내어 성폭력 가해를 하는 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단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대 이진만 교수, 동국대 김익기 교수, 서강대 김명준 교수, 시립대 정상균 교수, 서강대 홍교수, 서울대병원 ○교수(실명 확인이 안돼서 초성 처리함) 성폭력 사건과 다른 교수 성폭력 사건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된다.

▼ 사건 신고

교수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보다 큰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가해 교수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수업이나 논문, 전공 결정 등에 있어서 피해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교수-학생 관계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성폭력 사건 신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성폭력 가해 교수를 신고해서 사건 처리가 되더라도 학생들은 다시 가해 교수에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지난 1학기에 총여학생회로 몇 건의 교수 성폭력 관련 상담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 교수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와 신고인이 대학원 입학이나 진학에 있어서 그 학과나 교수의 영향력 - 가해 교수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 교수들까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 - 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결국 사건 신고로 인해 받게 될지도 모를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성폭력 사건 자체가 공론화될 경우 피해자나 신고인의 신원이 가해 교수에게 알려지게 되어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피해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사건 처리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징계권자인 학교 당국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학교로 신고되더라도 학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학교의 명예와 가해 교수를 먼저 생각한다. 징계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 교수들이고 사건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인 학생측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 학교 당국과 교수들은 교수 성폭력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대학에서 교수 지위가 이용되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사소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교수 성폭력을 대학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수 개인의 잘못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학교와 가해자를 포함한 교수사회 전체와 싸워나가야 한다. 학교와 교수 사회 모두가 가해자를 감싸주는 풍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수의 처벌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명예훼손 역고소

교수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교수들이 성폭력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구실로 사건을 은폐하고 처리 과정을 지연시키며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나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 훼손 역고소도 빈번히 발생한다. 가해 교수의 실명이나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개에서부터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알려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활동은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가해 교수는 성폭력 가해와는 별개로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된 몇몇 단어나 진술을 문제삼는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나 지원 단체 및 개인을 명예훼손 고소함으로써 사건 처리 자체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경제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교수에 비해서 처지가 낮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당했다는 점이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교수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징계도 대부분 가해 교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내려지게 된다.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징계가 되더라도 피해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감봉이나 정직 징계가 내려지고, 이러한 징계는 가해 교수의 지위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영향력 아래 있는 학생을 성폭력 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교수 성폭력이 의미하는 것은 가해 교수에게 더 이상 대학 사회에서 교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가해 교수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 정도를 나누어 징계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입은 성폭력 피해와 학습권 침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어찌 보면 학교 당국 자체가 가해 교수를 징계할 자격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 해결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성폭력 가해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는 학교는 교수 성폭력의 또 다른 가해자라고 볼 수 있다.

▼ 징계 및 처리 결과 공개

비록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할 경우 공개적으로 그 가해자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수 성폭력 사건은 처리 과정이나 징계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예방 교육

반성폭력 학칙에는 연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다.¹⁾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차원에서 전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 정부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학 사회에서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다수의 남성 교수들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러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행위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사건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수들은 예방 교육에 대해서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보느냐, 기분 나쁘다'는 식의 대학 사회의 책임감 있는 지위에 걸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 교수가 잘못된 거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 교수 사회가 이렇다보니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기관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예방 교육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 강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사들은 예방 교육 대상으로도 고려되지 않는다. 2003년 1학기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 1100여명의 강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학칙이 시행된 지난 3년동안 수천명의 강사들이 아무런 예방 교육도 없이 수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3. 교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학칙은 성폭력 사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수 성폭력 사건은 대학에서의 교수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지 개인간의 문제로 놓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의 학칙에는 사건 신고, 처리, 징계, 피해자 보호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수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규정들은 사

건 처리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교수 성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이 이후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정에서 고려되기를 바란다.

- 교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도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대책위원회는 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논의에서도 학생들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수 성폭력으로 절대적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교수가 교수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처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현재의 학칙은 피해자나 대리인이 직접 사건을 신고했을 경우에만 사건이 처리되게 된다. 하지만 교수 성폭력은 강의실 성폭력처럼 특정한 구체적 피해자가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 성폭력 신고로 인해서 받을지도 모르는 피해 때문에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직접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성폭력 사건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 교수 성폭력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다. 가해 교수의 영향력 때문에 피해 학생이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기 중에 수업에서 성폭력 가해를 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 교수의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후에도 학습활동에 있어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해교수가 정직이나 감봉의 징계를 받고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가해 교수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처리될 경우 이 사실을 다른 교수들에게도 공지해야 한다. 사건 처리 결과 공개는 교수 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성폭력이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교수 사회에 알려서 사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계 결과가 전혀 공지되지 않음으로써 교수 성폭력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도 한다.

-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예들이 많다. 징계를 받은 교수로 학교에 남아 있느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행위이다. 또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의 지위 변동은 징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교수의 지위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4항

<전반적인 특징>

- 미국 대학들의 반성폭력 학칙은 “평등권과 affirmative action 및 고충처리안” 하에 있음
- the use of Faculty Handbook *and/or* Faculty/Staff Member Policy
: 교직원용으로 따로 나온 학칙(다른 학칙조항들과 내용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전달하려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게 구분됨). 대부분 교직원 대상으로 나온 학칙에는 성폭력 관련 내용이 있으며 이에 대해 숙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romantic relationship의 금지 혹은 기피 권유 내용
: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꽤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 이 부분에서 “만약 교수-학생 간 관계가 상호합의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권력관계를 감안할 때 학생이 교수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할 시 해당 교수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해당 교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동의했음을 보이는 증거물을 대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두는 게 특징.
- 대부분의 학교 학칙에는 부가물(appendix)이 추가되는데 무척 자세함. 다양한 예시와 설명을 포함함. 시행세칙과 비슷?

<참고할 만한 사항> (완료된 것 아님)

○ 웰즐리 대학

* 학칙 中

- 교직원 간 상하관계일 경우: 직원과 성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상관일 경우, 그/그녀는 직원평가서를 써서는 안 되며, 직원의 임금 인상, 계약 연장, 승진, 혹은 그 어떤 특혜를 주는 결정과 관련한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을 평가하는 인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의 담당자를 요청할 수 있다.

- 교수와 학생 간 관계: 원칙적으로 사제간 성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의 목적상 금하며,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supervisory)일 경우 성적 관계를 엄금한다.

이 때 지도교수와 학생 관계의 범위:

- ① 학생이 직접적으로 학점을 평가받거나 추천을 받는 경우
- ② 학생이 해당 교수가 속한 학부의 과목을 전공하는 경우 (현재 직접적으로 그 교수로부터 지도 받지 않더라도 이후 해당 교수의 수업을 받게 될 수 있음을 감안)
- ③ 해당 교수가 담당하는 그룹에 학생이 속할 경우 (예를 들어 외국대학 연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등)

* 관련 사항들

-캠퍼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 ① 파란불 비상전화(캠퍼스 상주 경찰 핫라인)
- ② 캠퍼스 에스코트 (에스코트 팀과 함께 가거나 서트를 이용할 수 있음)
- ③ 정기적인 설문조사

④ 신입생 예방교육

⑤ 호투라기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⑥ 호신술 수업(1번/1학기)

-예방교육:

“성폭력 및 대인 간 폭력 예방 교육 위원회”에서 담당. 위원회는 Stone Center(상담실) 직원, 웰즐리 캠퍼스 경찰서, 학생처, 보건소, 학생회로 구성됨
“성적 건강을 위한 학생 상담원” 프로그램. 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치적인 상담 프로그램으로 워크샵, 오픈 하우스, 토론회 등을 마련함.

○ 밀즈 대학

* 교직원을 위한 학칙 中

- 학칙적용 대상:

- ① 가해 교직원 그리고 가해 방조한 교직원
- ② 교직원 신분으로 신고인에게 보복하는 자
- ③ 교직원으로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가해 직원을 막거나 교정하지 못한 자
- ④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려고 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려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전에 보복하려는 자

- 예방교육 대상:

학교와 관련 있는 모든 자 - 이사회 소속원, 학교 행정 당국, 교직원, 학생을 포함

○ 마이애미 대학

- 성폭력 사건 신고는 30일 이내로 한다. 단, 30일 이내로 신고를 못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있은지 4년 이내의 기간에 접수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다.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한 결과로서의 학칙으로 추측됨)
- 교수 성폭력 담당 조사관을 따로 둠 (교무처장이 임명)

○ 오사카 여자 대학교

- 적용범위 중: 이 학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 역시 근무하던 당해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적용받는다.